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위헌성

이 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1. 머릿말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상의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적절한 사전, 사후통제나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절차들이 사실상 배제된 체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재원이 공공자금화하여 정부의 재정조달의 한 방편으로 운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국민연금제도상의 다른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가령 불합리한 기여, 급여체계나 표준 소득율액 정의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지급할 급여를 1000분의 750으로 감축하는 등의 백지위임규정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도 시급히 개혁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으나 근본적으로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참여권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의 기금의 방만한 관리, 운영과 이로인한 기금고갈과 연금제도의 파탄이라는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민연금법 제84조 3항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1, 2항의 의무예탁규정 등의 개정과 국회 및 일반가입자들의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민주적 통제 내지 의사결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동 결정의 위헌결정을 받기 위한 법률 작업에 착수하였다. 94. 하반기에 시작된 이러한 작업은 곧바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상의 어려움(제소기간이 법률 공포시로부터 180일임)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동 법률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손해배상 소송과정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0단독 재판부에서는 1996. 2. 15. 자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는 취지로 95카기6548호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한 바 있다. 법원의 위와같은 결정은 국가와 정부가 독점하는 사회복지 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 차원에서의 민주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열게 한 최초의 사법적인 판단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는 바, 현행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위헌성에 대하여 결정의 취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요지

가. 본안사건의 개요(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

(1) 연금가입자인 김선웅외 1인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상대적 금리차로 인한 손해발생 및 방만한 운영 및 의사결정참여권 배제 등을 이유로 하여 장차 발생할 기금 고갈에 관한 손해를 포괄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94가단 17535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국민연금법상 연금가입자들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이는 곧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직결되는 것이다. 결국 필자로서는 소위 기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연금가입자들이 조성한 연금가입자 전원의 종유 재산으로서 관리주체인 국가(소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임)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이른 바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에서 법리를 전개하였는 바, 이와같은 논리는 사회보험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만 본건 소송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연금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로서 부득이한 법이론이라고 하겠다.

(2) 정부에서는 신탁적 양도설에 입각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1심법원에서 이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배상청구권의 전제되는 연금가입자들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연금가입자들이 기금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든지 비민주적 기금의 운영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결국 이와같은 악결과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무예탁 및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초래된다고 보고 원고측의 동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따라 동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위헌제정결정된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상 위헌결정을 받아야 할 규정들은 적지 않으나 본건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기금의 비민주적인 운영이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부분은 민법상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일단 위헌으로 해석되어야 할 법령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제4677호 ; 이하 공자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2항과 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 제8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2개로 국한하여 문제시하였는데 그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자법 관련조항

각종 기금 및 체신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자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기금, 체신예금 및 자산의 관리자는 그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 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7. 기

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채신예금이외의 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채신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이자율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연금법 관계조항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연금법 제84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3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외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3.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자 4. 관계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장 2인 2. 사용자외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의 장 1인 3. 농어민과 농어민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3인 4.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단이사장 5.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민연금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제정 및 운용실태

(1)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대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1) 가입대상에 있어서 전국민연금제도(즉, 개보험)가 아니고 현재는 순수한 근로자들로서 연금가입자가 구성되어 있고, 2)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법률상으로는 적립방식이나 보험료부담액이 급여혜택에 미치지 못하는 수정적립방식의 실질을 갖고 있으므로 연금기금이 누적되는 제도 도입단계에 기금을 증식시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우기 연기금조성에 대한 정부 부담이 없는 현행제도에서는 더욱 필수적이며 3) 보험료의 납부는 그 3분의 2가 근로자 개인이, 나머지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4)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운용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해 놓고도 한편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급관청인 재정경제원장관이 맡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위원장 밑에서 단순히 업무만 집행하도록 될 위험이 있다고 전제되는 사실판단을 하였다.

(2) 나아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관련하여는 1) 법 제정경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재정개혁 부문에서 각종 공공자금을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하고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을 재특제도로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하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정비하고 공공자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관리 및 통제능력이 탁월한 공자법을 제정하여 1994. 1. 1. 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매년의 급부비 및 행정비를 제외한 모든 지불준비금 및 기금을 의무적으로 위 관리기금에 애타하게 되어 정부가 재정투융자 등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장관이 하고 이에 관한 의결기관인 운용위원회 역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등 재정경제원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으며, 3) 연기금의 공공자금에의 운용현황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첫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기금예탁비중이 절대적이며 이점에서도 공자법의 목적이 연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신규조성자금의 50% 상당이 시장이율보다 훨씬 낮은 연 9.5% 내지 11%의 이자율로 상환기간 5년의 재정자금으로 동원되어 이 기간 동안의 금융부문 평균수익률 13.67%와의 수익율차이로 1230억원 상당의 운용손실을 보았다는 점, 셋째 공자법 제정 이후의 공공부문 투자에 관련하여도 a) 연기금이 연금가입자들의 신탁재산이며 정부부채임에도 동법의 규정대로 여유자금을 수익성이 낮은 재정자금에 전액 예탁할 경우 수익율이 크게 저하되어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크며 b) 1997년까지만 해도 약 20조원의 연기금이 예탁되어 소비됨으로써 원리금의 상환문제가 재정압박요인이 되어서 상환불능 내지 상환연기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 적립방식의 연금제도가 무너지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며 c) 재정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조달된 재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더우기 연기금에 있어서 '여유자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규정은 곧 국민연금법제의 근본취지를 해손하는 것이며 특히 예탁규모와 관련, 그 결정권한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전혀 유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제83조 소정의 기금운용방안 규정이 사문화되고 연금가입자등 출연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금이 운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위헌심판제청결정 이유의 검토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제청사유

(1) 신청인들의 주장

위 결정에 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위헌심판제청신청서상의 해당부분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갖고있는 국민연금법 소정의 정지조건부 연금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의 재산권이자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의 강화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을 위한 특정목적하에 수탁, 관리하고 있는 위와같은 신청인들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을 기금 본연의 법률상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에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을, 제2항에 연금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자금을 전액 여유자금으로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 95년 현재 국민연금기금 누적총액의 71.8%를 94년도 조성금의 87%가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 이를 전용하고, 나아가 상대적 저리의 금리를 책정하여 이를 운용하여 연금재정의 수익성을 해치고, 연금기금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운영 및 이로 인한 장기적인 기금고갈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신청인들을 비롯한 연금가입자들의 앞서 본 바와같은 헌법상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의금지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더우기 위 조항 제2항의 여유자금 정의 규정은 국민연금기금이 장래의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 자체내에서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용수익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자금은 전액 여유자금이라고 간주하여 의무예탁토록 한 것은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적립방식’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하겠습니다.

2)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위와같은 특정목적하의 국민연금기금을 그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을 강제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이 엄존하는 한, 위와같은 신청인들을 비롯한 연금가입자들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은 본질적인 침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결정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건실하게 하는 의미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위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입법시의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1)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이 되는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일반회계”에 대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들에 의하여 법률상 개설되는 것으로서 위 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각종 특정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임의로 집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은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회계구분) 제2항은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은 현행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수익성을 배제한 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예탁 등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이를 운용하고 있는 바, 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 특별회계로서 재정자금이 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은 당해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와 목적이 다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종의 재정자금으로서 이는 법률이 정한 조세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조성하여야 함과 아울러 그 집행에 관하여 폐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헌법 제54조 소정의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을 받아야 할 성격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국민연금기금 등 특정한 설치목적을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성격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의 의무예탁규정을 두어서 1) 일반 조세로 거둬 들여서 동액 상당의 재정자금을 조성할 경우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회피함과 아울러 2) 일반회계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회피하여 특별회계로서 국민연금기금 등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자의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갑제8호증의 1,2 중 65p 보건사회부의 입법의견 참조)

4) 정부재정자금의 조달은 형평과세를 통한 조세수입에 의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 조항은 정부재정수입의 부족분을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전용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등에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특정 목적의 특별회계는 과세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재정조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54조 소정의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임은 물론,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익성있는 연금기금운용을 자의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설치목적을 무시하는 입법으로서 헌법상의 자의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위헌법률입니다."

(2) 법원의 제청사유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전제하에 특히 첫째의 위헌제청신청사유를 중심으로 하여 공자법 제5조 제1,2항 소정의 의무예탁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하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할 의무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어서 위 법과도 상충되는 점등을 보더라도 정부가 경제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급히 입법을 서두르는 바람에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위헌성

(1) 신청인의 제청신청사유

(가)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위촉되는 위원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장 2인(1호), 사용자 이외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의 장 및 산별연합단체의 장 1인(2호),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단이사장(3호), 관계전문가 2인(4호) 등 7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제기획원 장관, 기타 경제부서의 장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하여 그 회의는 재정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도하여 그때의 경제여건 및 정부재정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정자금조달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결정을 사실상 하여 오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주체인 보건사회부장관, 재수탁관리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하더라도 직접적인 연금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2인을 합한 총4명으로는 500여만명의 연금가입자들이 자신이 각출하여 조성한 연금기금의 운용방법등을 심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각 조항들은 소위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그 재산권자인 신청인들 등 연금가입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입니다.”

(2) 법원의 제청결정사유

법원은 신청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연금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전망과 과제

위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개시결정이 되어서 양측의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제기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신청인 측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위 재송에 관한 변론을 준비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에 변론절차 개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분야, 특히 거시적인 분야인 사회보험제도에 관련하여 의외로 전문가들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법제와 관련하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척박한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본건 위헌제청 결정을 디딤돌로 하여 관계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낙후된 한국 사회복지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개혁과 연구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